

-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-

수정안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2조(설립기관의 범위) ②----- 2인이상의 -----	제2조(설립기관의 범위)②----- 2 이상의 -----
제3조(협의회 설립) ② ----- 제2조 제2항의 -----	제3조(협의회 설립)② ----- 제2조 제1항의 -----
제9조(이의신청에 대한조치) ①-----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----- ②----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-----	제9조(이의신청에 대한조치) ①----- 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----- ②---제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-----
제13조(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) -----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-----	제13조(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) -----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합의에 의하여 -----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